

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21-0041호

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운영요령을 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2월 3일
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

「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」 등 10종의 운영요령 제정(안) 행정예고

1. 제정 이유

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에 따라 법제8조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을 위해 인정신청분야 및 범위,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반의 자격 및 등록 요건, 공인기관 인정기준 및 공인기관 인정마크 표시방법 등에 대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

2. 주요 내용

○ 「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」

-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국가기술표준원 내에 설치된 인정기구의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

○ 「**KOLAS**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」 및 「**KAS** 공인제품인증 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」

-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) 제4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인정신청 분야 및 범위 규정
-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규칙 제5조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 및 인정서 교부 등에 대한 절차 및 세부사항 규정
-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규칙 제6조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을 위한 기준 규정
-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규칙 제7조에 따른 공인기관 변경 운영 및 보고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
-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규칙 별표3에서 규정하는 중결함, 치명결함 A 및 치명결함 C에 해당하는 인정취소 등의 결함기준 규정

○ 「숙련도시험 운영요령」

-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규칙 제6조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 기준으로 적용되는 숙련도시험에 대한 참여 주기 및 실적 인정 프로그램, 부적합 사항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

○ 「**KOLAS**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」 및 「**KAS**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」

-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평가반 구성, 인정을 위한 세부절차, 수수료, 평가일수 산정 등을 규정

- 「KOLAS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」
및 「KAS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」
 -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을 위한 평가사 및 기술전문가의 자격·등록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
- 「KOL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」 및 「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」
 -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공인기관의 인정마크 사용에 대한 기준, 공인성적서 작성방법 및 오용시 행정조치 등 인정마크 표시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

3. 의견 제출

「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」 등 10종의 운영요령 제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라. 보내실 곳

○ 주소 : (27737)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

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

○ 전화 : 043 - 870 - 5496

○ 팩스 : 043 - 870 - 5679

○ 이메일 : kok0816@korea.kr